

우즈베크 기업부담 주요 세제 현황

1. 주요 세제

가. 국세

(1) 법인세

(가) 세율 : 12% (매출액에서 과세 제외대상 제외 후 적용)

(나) 과세 대상

비용 및 기타 지출, 각종 세금, 은행단기대출 이자 및 기타 금융기관 이자, 종업원 급여 등 제외. 일부 기부금 및 유가증권 매각 손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

법정 한도 초과 광고비, 연예비 및 출장비, 비은행 대출 이자, 은행 장기 대출 이자 및 연체 이자 등은 과세

(다) 특별세율 적용

아동용 및 여성용 위생용품 그리고 예술품·공예품 생산전문 기업은 10% 감면

매출액중 수출비중이 15~30%인 경우 30% 감면한 8.4%, 30% 이상인 경우 50% 감면한 6.0% 각각 적용

- 우즈벡 투자프로그램에 포함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일로부터 최장 7년까지 면제. 면제기간 후에는 전액부담
- 신설기업의 경우 가동 첫해에는 법인세율의 25%, 2차년도에는 50%, 3차년도부터는 100% 적용
- 우즈베키스탄 상설 법인의 영업 행위와 상관없이 우즈베키스탄내에서 발생한 다음 이윤에 대해서는 원천징세

소득원	원천징수세율
배당금 및 이자	15%
보험료	10%
통신 및 운송 활동	6%
로열티, 임대료, 관리 서비스/컨설팅 수수료, 기타 서비스 소득	20%

(2) 부가세

(가) 세율 : 거래액 기준 20%

(나) 면제 · 감면 대상

- 대 우즈벡 수출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시 면제. 부가세 부과 국가로의 수출시에는 20% 과세
- 우즈벡 정부가 국제금융기관, 외국 등과 체결한 협약에 의한 기금, 차관, 증여 등을 재원으로 수입되는 장비, 원자재, 용역 등에 대해 면제
- CIS로 경화수취 조건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면제

- 경공업성 회원사가 수입하는 첨단기술 보조장비 및 부품, 외국 인투자자가 현물투자하기 위해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 면제
- 우즈베크에서 생산되지 않는 화학제품, 염색소, 액세서리, 기타 보조장비 등 수입시에는 '09. 1. 1.까지 면제
- 원면, 면사 등 국내시장에서 경화로 구입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'09. 1. 1.까지 면제
- 순이익과 수입원부자재 수입액을 비교, 전자>후자시에는 부과세 납부, 그 반대시에는 면제

나. 지방세

(1) 재산세

- (가) 과세대상 및 세율 :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부동산, 설비 등 재산액에 대해 매월 3.5% 납부
- (나) 면제·감면 대상
 - 경공업성 회원사에 대해서는 '09. 1. 1.까지 완전 면제
 -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15~30%인 경우 30% 감면한 2.45%, 30% 이상인 경우 50% 감면한 1.75% 각각 적용
 -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등록후 2년간 면제
 - 한국의 경우 부동산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나, 우즈베크은 설비금액도 전체 재산액에 포함하여 부과함으로써 훨씬 부담이 큼

(2) 인프라개발세 : 순이익 기준 8% 월별 납부

- 순이익 발생시 부담
- 수출시에는 일정기간 면제
- 경공업성 회원사에 대해서는 '09. 1. 1.까지 면제

(3) 토지세 : 소유토지 면적에 근거 분기별 납부

- 계산식 : 전체 토지면적 \times 379.4숨/m² ('06. 5. 현재)
- 경공업성 회원사에 대해서는 '09. 1. 1.까지 완전 면제

다. 비예산 기금 납부액

- 단일사회부담금 : 전체 급여액의 25% 회사 부담, 매월 납부
- 연금기금 : 부가세, 물품세 제외한 매출액 기준 0.7% 회사 부담, 매월 납부
- 교육기금 : 부가세, 물품세 제외한 매출액 기준 1.0% 회사 부담, 매월 납부
- 도로기금 : 부가세, 물품세 제외한 매출액 기준 1.5% 회사 부담, 매월 납부
- o 저작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도로기금이 면제되나 이 지역에서는 기업활동에 애로가 많아 사실상 면제효과 없음

2. 세제 문제점

- 기본적으로 세율을 높게 책정하고, 각종 예외조항을 통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금 감면, 면제
 - 세무 공무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감면 예외조항에 부합함을 증명하여야 하며,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 발생
 - 신규진출기업의 경우 절세를 위해 회사설립단계에서부터 미리 면제조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, 세무 공무원 등과 협의하여, 면제조항에 부합, 절세할 수 있도록 기업설립 추진
- ⇒ 복잡한 예외조항 등을 통한 면제요건을 단순화하고, 아울러 기본적으로 세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
- ⇒ 예외조항 적용과 관련한 세무 공무원들의 세법조항 적용 및 해석, 향후 세법적용의 차이발생 등으로 인한 과세 문제소지 잉태
-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절세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은 매출액의 10% 수준 → 사실상 기업 흑자시현 불가능 : 기업신규진출에 현실적인 장애요인

(자료제공 : 우즈벡 주재원)

문의: 전문연구원 유재형(☎02-3779-6655)
E-mail : yoojay@koreaexim.go.kr